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의 육성

-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위탁관리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일부를 위탁관리(안 제4조)

라. 위탁단체의 재정지원

-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안 제5조)

마.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군수와 협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사전규제검토 : 기획감사실-8520(2011.10.25)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기획감사실-8535(2011.10.26)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 2011. 11. 3~11. 23.(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사.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평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정책을 보호·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평창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활동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교류활동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6. 그 밖의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및 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체육 행사 개최 및 자치단체 주관 교류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 생활체육진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

2. 미첨부 사유

- 군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업무의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 확정 전 재정소요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체육과 과장 최 원 규
연락처	(033) 330 - 2250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